



Web Contents



2024년 05월 06일 03시 38분

목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제도기간 1년 연장

2024.04.25 조희수 47 담당부서 민원봉사실

국토교통부 **RECO 한국부동산원**

주택 임대차 신고 제도기간이 1년 더 연장됩니다 (*25년 5월 31일까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신고 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의무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 대상 **아래 ①, ②, ③ 모두에 해당될 경우**
①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②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③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해당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 방법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 온라인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재제 사항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 1533-2949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rtms.molit.go.kr> 또는 관할 기초지자체 (읍면동)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연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하여 개별담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관할 시군구에 문의하십시오.

- 내년 5월 말까지 제도기간 1년 연장...신고 의무는 유지

목포시가 올해 5월까지였던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제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제도기간을 종전의 2024년 5월 31일에서 2025년 5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하는 제도이다.

2021년 6월 1일 이후 지난 3년간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과태료 부과 제도의 제도기간을 운영해 왔으며, 오는 31일 제도기간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본격적인 과태료 부과 시행에 앞서 추가 홍보,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 조성, 과태료 수준을 완화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제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임차인이 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의 편의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또한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와 주거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하면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도기간 연장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는 유지되는 만큼 제도 (<http://www.mokpo.go.kr>)

기간 중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바란다"면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도 수수료없이 자동으로 부여되니, 임대 주택 소재지 등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원봉사실장 오세운, 토지관리팀장 김은식 270-8239, 주무관 최다연 270-8640)

첨부파일 전체(Zip)다운로드	 3.목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과태료 제도기간 1년 연장.jpeg (14 hit/ 161.6 KB) ↓ 미리보기
-------------------------------------	---

목록

이전글 목포 넘어 대한민국 대표할 야간관광상품 목포해...	다음글 목포시여성단체협의회·한국부인회목포지회, 목포...
-------------------------------------	------------------------------------

COPYRIGHT © MOKPO-SI. ALL RIGHT RESERVED.

MokPo - Si
Web Contents

